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·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기록자치 실현 및 기록관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을 확보코자 동 조례를 개정.

2. 주요내용

가. 직급별 정원 조정

ㅇ 일반직(6급 상당이하) : **현행 388명 → 조정 387명(본청, △1)**

ㅇ 연구사(전체) : **현행 2명 → 조정 3명(증1)**

- 기록연구사 : 1명 (본청, 증1)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: 생략(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)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2조

6. 참고사항

가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3〕

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(제4조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 면
총계	539	263	12	96	14	154
정무직 계	1	1				
군수	1	1				
일반직계	416	219	7	48	8	134
4급	1	1				
4~5급	3	2				
5급	25	11	3	0	1	10
6급 상당 이하 계	387	205	4	47	7	124
별정직 계	18	2	1	12	3	0
6급상당 이하 계	18	2	1	12	3	
연구사 계	3	3	0	0	0	0
학예연구사	1	1				
임업연구사	1	1				
기록연구사	1	1				
지도직 계	28	0	0	28	0	0
지도관	3			3		
지도사	25			25		
기능직 계	73	38	4	8	3	20